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전종덕
임미애 · 문대림 · 황명선
김현정 · 이원택 · 이소영
유동수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재 건립된지 20년 이상 경과한 청과 도매시장이 전체의 96.9%에 달하는 31개소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.

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출하 농산물의 경매대기 장소 부족, 저온저장고 미비 등에 따른 농산물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임.

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으로 부터 도매시장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함.

이와 관련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공영도매시장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주요내용

- 가.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
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에 사용해야 함(제20조제3항).
- 나.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을 기준으로
시장사용료의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(제78조제5항).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·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정비·개선을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0조(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2조 제1항제1호에 의해 징수한 도매시장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·개선에 사용하여야 한다.</u>
제7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8조(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정비·개선을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 사용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.</u>